



# 2025년「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」 2차 오프라인 지원기업 모집공고

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 우수 제품의 유통 판로개척 및 내수 판매증진을 위하여 2025년 「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」 오프라인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(입정사)을 모집 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5. 3월

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



## 1 지원사업 개요

- 사업명 : 2025년 「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」
- 사업기간 : '25. 3월 ~ 12월
- 사업내용 :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의 오프라인 판로 및 마케팅 지원
- 지원대상 :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(공고일 현재 기준)
- 지원규모 : 100개 기업 내외 (연간 최대 181개 사 예정)
- 지원기간 : 입정 계약일 ~ '25. 12. 31.
- 지원가능 제품 하단 '표' 참조

지원기업 신청가능 제품군	지원기업 신청불가 제품군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생산한(기획·제조) 제품</li> <li>- 도내 중소기업이 설립한 해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</li> <li>-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다른 업체에 위탁생산(OEM)한 제품</li> <li>-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에 위탁생산(OEM)한 제품</li> <li>- 자사 제품과 타사 브랜드가 협업(콜라보레이션)하여 기획된 한정 제품</li> <li>- 도내 농업인 또는 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의 제품</li> <li>- 도내 중소기업이 산지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한 제품 (도외 재배 시,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만 지원 대상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류, 의약품, 기업형 의료기기, 산업재, 원부자재류, 부품, 소프트웨어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</li> <li>-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보호, 상표, 저작권 등 법적 분쟁이 있는 제품</li> <li>- 다른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</li> <li>- 시장에서 바로 유통이 어려운 시제품</li> <li>- 공급사 및 제조사를 통해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제품</li> <li>- 해외직구 및 병행수입을 통해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제품</li> </ul>

## 2 지원사업 세부 내용

### ① 지원사업 : 2차 선정기업 대상 유통채널 협의 후 행사 시기 확정

구분	지원내용
오프라인 판로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형마트 오프라인 매장 팝업 행사지원</li> <li>- B2B 협약을 통한 대량판매 기회 제공, 재구매 구조 정착 지원</li> <li>- 특정 행사일 전단 판촉 등 매출 증가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적용</li> </ul>
	  
	<p>행사 특가 판촉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팝업 행사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마케팅 홍보</p>

## 3 사업 진행절차 및 심사 내용

### ① 사업 진행 절차



### ② 심사 절차 및 내용

- 1차 심사 : 서류전형
- 2차 심사 : 외부 전문가 선정위원회를 통한 정성적 평가


평가항목	세부항목
지원 필요성(10)	- 판로지원의 필요성, 시급성 및 사업참여 의지
제품 경쟁력(30)	- 기업 제품의 시장 경쟁력 여부 - 평균적 고객 수요가 있는 제품에 대한 경쟁력 - 경쟁제품 대비 기술, 성능, 디자인, 가격 비교 우위 여부 - 해당 제품의 원재료 가공 수준 및 품질 완성도 -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등 법령 준수 여부
기업 역량(10)	-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여부 - 조직 구성원의 전문성 및 인적 네트워크 보유 여부
기대 효과(10)	- 지원을 통한 발전 가능성, 매출 증대 가능성 - 지원을 통한 기업인증, 지식재산권, 투자유치 가능성
판매 적합도(40)	- (오프라인) 상품 크기 등 오프라인 판매 적합성 확인 오프라인 직매입 대응을 위한 물량 보유 여부 88바코드 등 오프라인 판매를 위한 제반사항 준비 여부
총 점(100)	- 법 위반 사실 확인시 총점의 20% 감점 적용
가산점 (각 2점/최대 4점)	- (공동) 착한 기업 선정기업,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, 주 4.5일 근무도입 기업, 유니콘 기업 - (오프라인) 여성 기업, 장애인 기업

#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## 1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2025. 3월 19일 (수) ~ 4월 2일(수) 18:00까지
- 신청방법 :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접수만 가능
  - ① **[사업신청]**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([www.kgcbbrand.com](http://www.kgcbbrand.com))접속
    - 알림소식 → 사업공고 → 경기도 '2025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' 오프라인 판로지원 지원기업 모집 공고 선택 → 지원사업 신청하기 →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다운로드 → 구비서류 업로드 → 상품 등록 (대표상품 1개 필수) → 접수 완료

## 2 필수 제출서류

구분	제출 서류	제출 서류 유의사항
작성 서류	[서식1] 개인정보 및 기업 경영 정보 수집 활용에 대한 안내 및 제공 동의서	* 사업 공고문에 첨부된 제출서류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스캔하여 ZIP 파일로 압축 후 회사소개서 및 기타 자료란에 업로드
첨부 서류	[첨부서류] 사업자등록증 (또는 공장등록증) [첨부서류] 중소기업 확인서/국세, 지방세 납부 확인서	* 첨부서류는 원본대조필, 유효기간은 접수기간 내 서류에 한함
	[첨부서류] 인증 및 확인서 등 증빙서류	* 서류 제출시에만 가산점 부여 (4p 사업별 가산점 항목 참고) * 착한기업 선정기업 인증서류는 회사 소개서 및 기타자료란에 업로드
	 <p>사업자등록증    중소기업 확인서    납세증명서    지방세납부확인서    인증서 및 확인서</p>	
선택	[서식2] 이의 및 구제신청서  회사소개서 및 기타자료	* 법위반 해당기업의 경우 이의 및 구제 신청시에만 제출 * 회사 및 상품 관련 자료 첨부시 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 될 수 있음 * 용량 큰 경우 이메일로 후첨 가능
샘플 발송	제품 샘플 (우편 또는 택배 발송)  우)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, 2동 7층 (삼평동, 판교테크노벨리 스타트업캠퍼스)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유통사업실 (031-5171-5325)	* 제품 샘플 자료는 공고 마감일까지 제출처 주소로 도착해야 함 (대표상품 1개만 접수 가능) * 품평회 이후 샘플은 반환불가하며 큰 부피, 고가제품은 사진, 팜플렛 등 자료로 대체 가능 (사진, 팜플렛 파일 제출 불가시 우편 또는 택배로 실물 제출해야 함) * 유통기한 짧은 냉장/냉동보관 식품의 경우 밀봉패키지로 발송하거나 사진, 팜플렛으로 대체

## 5 사업참여 유의사항

### ① 「경기도 법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」 준수

- 조례 제6조에 따라, 법위반 사실 확인시 **평가 총점의 20% 감점 적용**
  - ① 조례 제2조제1호 공정, 노동, 환경, 납세 관련 11개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
    - 가. (공정) ① 공정거래법, ② 하도급법, ③ 표시광고법
    - 나. (노동) ④ 근로기준법, ⑤ 산업안전보건법
    - 다. (환경) ⑥ 폐기물관리법, ⑦ 대기환경보전법, ⑧ 소음진동관리법, ⑨ 물환경보전법
    - 라. (납세) ⑩ 국세기본법, ⑪ 지방세기본법
  - ② 위반사실 조회기간 : 사업 공모일(모집일) 기준 2년 이내
    - 가.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, 과징금, 과태료
    - 나.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, 고발건은 사실 확인시 제한기준 적용
  - ③ 사업참여 제한조건(변경)
    - (기존) 법위반 사실 확인시(1회이상) 공모사업 참여자격 제한
    - (변경) 법위반 사실 확인시(1회이상) 평가 총점의 20% 감점 적용**
    - 가. 사업자 선정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(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(서식2) 내용과 상이) 사업 취소·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
    - 나. 사업자 선정후 신규 법위반시 사업부서별(사업별) 법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
  - ④ 법위반사실 확인(변경)
    - (기존) 기업이 법위반 행정 처분기관에서 발급한 사실 확인서 제출
    - (변경) 사업부서에서 기업의 법위반사실 확인**
    - 가. (공정)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(법위반조회발급/법위반사실조회)
    - 나. (노동)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
    - 다. (환경) 기업 소재지 관할 시·군
    - 라. (납세)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
  - ⑤ 이의 및 구제신청(변경) :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신청서(서식9) 제출
    - (기존)
      - 가. 사업자선정위원회(실국 또는 수탁기관)에서는 사업자 선정전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후 (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)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
      - 나. 법위반 사실 조회기간 내 2회 이상 법위반시 소명기회 제외
    - (변경)**
      - 가. 사업자선정위원회 등(실국 또는 수탁기관)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(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) 사업자 선정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(기업의 권리구제, 행정결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결정기한 연장 가능)
      - 나. 삭제